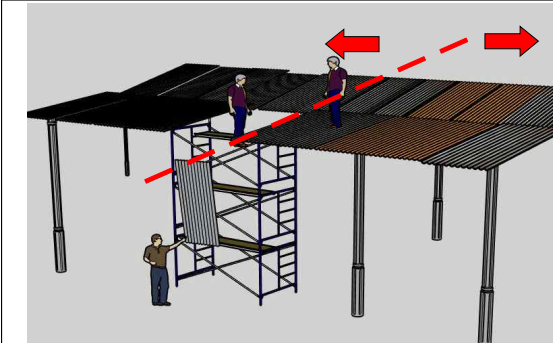


축사지붕 증축작업 중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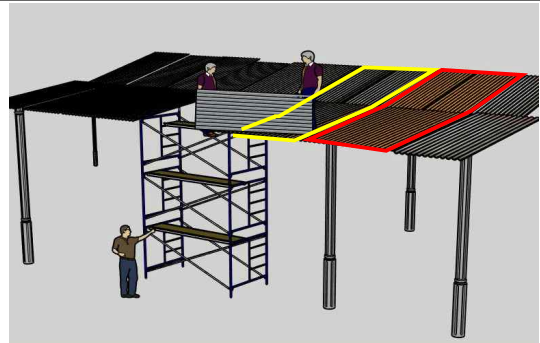
재해개요

2020.10.3.(토) 08:50경 재해자 ○○○는 여주시 ○○○읍 소재의 ○○○농장 내 축사증축을 위하여 축사지붕 위에서 지붕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지붕(선라이트)이 깨지며 바닥으로 떨어져(높이 약 4m)당일 사망한 재해임.

현장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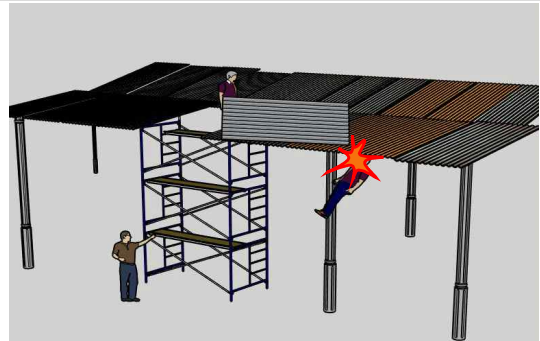
[그림1] 작업반장이 밑에서 로프로 감아 합석을 올림
* 점선기준 좌측 : 지붕 증축작업을 실시한 부위
* 점선기준 우측 : 기존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던 부위



[그림2] 재해자와 동료작업자가 지붕위에서 합석을 받음
* 노란부위 : 기존에 합석이 설치되어 있던 부위
* 붉은부위 : 기존에 선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던 부위



[그림3] 합석을 완전하게 올리기 위해 재해자가 뒤로 이동하며 선라이트를 밟음



[그림4] 선라이트가 깨지며 재해자가 추락함

재해발생원인

①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『떨어짐 방지조치』 미실시

근로자 이동 통로에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설비,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방지조치 없이 이동 중 추락함.

②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동 또는 작업시 보호구 미착용 및 관리감독 소홀

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붕(높이 약 4m)에서 이동 중 안전대·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, 보호구 착용여부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.

재해예방대책

① 떨어짐 위험장소 이동 또는 작업 시 『떨어짐 방지조치』 철저

지붕 등 강도가 약한 재료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할 때 작업자의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 및 이동통로에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

또한 작업장소 및 이동통로를 따라 안전대 부착설비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함.

② 떨어짐 위험장소 작업 시 보호구 착용 및 관리 감독 철저

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 및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
또한 지급된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